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1
----------	----------

제안일자 : 2022. 09. 22.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을 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수정하여 법체계상 통일성을 도모하고, 사업별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변경함. (안 제5조)
- 안 제16조는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으나, 개정의 실익이 적어 현행을 유지함. (안 제16조)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5조의 제목 “(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시 공간정보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함. (안 제5조)
- 안 제5조제2항 중 “시의 실·본부·국, 소속 행정기관 및 자치구는”을 “관리기관의 장은”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으로, “10월 31일”을 “8월 31일”로 수정함. (안 제5조제2항)
- 안 제16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현행 제2항과 같이 신설함. (안 제16조)
- 자구 수정 및 개정지시문 순서 일부를 변경함.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 제목 “(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의 실·본부·국, 소속 행정기관 및 자치구는”을 “관리기관의 장은”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으로, “10월 31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보호”를 “시 공간정보의 보호”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u>서울시</u>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p> <p>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공간정보담당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다.</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6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조(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 ----- ----- ----- 시 ----- ----- -- 수립한다.</p> <p>② <u>시의 실·본부·국, 소속 행정기관 및 자치구는</u>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u>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u> 사업별 시행계획을 매년 <u>10월 31일</u> 전까지 시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보호</u></p> <p>제16조(보안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p> <p><삭 제></p>	<p>제5조(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u>관리기관의 장은</u> ----- ----- ----- <u>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u> ----- -- <u>8월 31일</u> ----- -----.</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시 공간정보의 보호</u></p> <p>제16조(보안관리) ① ----- ----- ----- ----- ----- ----- -----.</p> <p>② <u>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그 밖에”를 “종합적인 활용·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을 “시 공간정보 체계의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시”를 “시”로, “수립·시행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업별 시행계획을 매년 8월 31일 전까지 시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2장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9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목록정보”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보급·활용 촉진”을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3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8조”를 “법 제3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제정된 시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시 공간정보의 보호

제16조의 제목 “(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를 “(보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로, “위하여 공간정보의”를 “위하여”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보안심사) ①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4 및 영 제24조의3에 따라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의4제2항 및 영 제24조의3에 따른다.

제20조(보고 및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목적·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 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u>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그 밖 <u>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u>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u></p> <p>제5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u>서울시</u> 공간정보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p> <p>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공 <u>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공간정보담당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다.</u></p> <p>③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6조 (생 략)</p> <p>제7조·제8조 (생 략)</p> <p>제9조(공간정보 목록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 (영 제2조의 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 른 <u>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국가공간정보 기본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 종합적인 활용·관리를 위하여 -----.</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u>시 공간정보체계의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u></p> <p>제5조(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 시 ----- 수립한다.</p> <p>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 도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업별 시 행계획을 매년 8월 31일 전까지 시 공간정 보 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u>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u></p> <p>제9조 (현행 제6조와 같음)</p> <p>제6조·제7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p> <p>제11조(공간정보 목록관리) ① ----- 목록정보-----</p>

보”라 한다)를 12월 31일 기준으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3장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보급·활용 촉진

제14조(공간정보 제공) 시장은 법 제33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공간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범위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 작성하여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삭 제>

제14조(공간정보 제공) ① -- 법 제34조-----

----. 다만,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제정된 시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시 공간정보의 보호

제16조(보안관리) ① -----

-----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위하여-----.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안심사) ①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4 및 영 제24조의3에 따라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의4제2항 및 영 제24조의3에 따른다.

<신 설>

제20조(보고 및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5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목적·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 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

<신 설>

계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